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세무2과	1

(2015. 5. 14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김 은 모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안 건 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4월 28일(화)
-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- 2015년 5월 4일(월)

4. 관계법규

- 「의료법 시행규칙」제28조(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), 제32조
(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)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7조(수수료의 금액)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 개정이유 >

- 동(同)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을 관계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< 주요내용 >

가.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보건복지부령 제282호(2015.1.2 개정 시행)

- 우리 구 조례 제3조 관련 [별표]의 제2호
 -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(72종)중 의료기관·부속의료기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수료 등 개설 장소 이전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변경허가(신고) 수수료를 삭제하고,
 - 부속의료기관 관련 인·허가 신고 수수료 종목명 명료화함

나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(2014.12.10 개정 시행)

- 우리 구 조례 제3조 관련 [별표]의 제4호
 - 수수료의 종류 및 수수료 금액 개정
 - 공개대상 종목을 4개로 분류하고 세부항목 62종을 44종으로 통합

[검토의견]

- 동(同) 조례안은 2015.1.2.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개정 시행에 따라, 우리 구 조례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(72종)중 의료기관·부속의료기관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 수수료를 삭제(개설 장소 이전에 대한 수수료만 제외)하고, 부속의료기관 관련 인·허가 신고 수수료에 대한 종목명을 명료화하였고,
- 또한 2014.12.10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으로 우리 구 조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(62종)에 대한 수수료 금액 개정 및 공개대상 종목을 4개로, 세부항목을 44종으로 통합하였고, 열람 및 출력물 구분을 단위수량별로 보기 쉽게 정리하였고, 문서·도면·사진의 열람, 복제는

장당 기준에서 시간 또는 용량(MB)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으로는

동(同) 조례 제3조의 별표 제2호에서는 「의료법 시행규칙」(보건복지부령 제 282호, 2015.1.2) 이 개정되어

-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(72종)중 의료기관·부속 의료기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수료 등 개설 장소 이전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변경허가(신고) 수수료 삭제하고,
-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(개설신고) 및 변경허가(변경 신고)에 관한 수수료 사항을 의료기관 개설(변경)허가, 개설(변경)신고 종목 명칭 사이에 ‘부속의료기관’ 을 삽입하여 수수료 종목을 명료화함.

가목(28) : “의료기관 개설허가”를 “의료기관·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”로

가목(29) : “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”를 “의료기관·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(장소이전)”로 변경하고

나목(22) : “의료기관 개설신고”를 “의료기관·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”로

나목(23) : “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”를 “의료기관·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(장소이전)”로 변경함.

동(同) 조례 제3조의 별표 제4호에서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2014.12.10) 제7조의 공개대상 및 수수료 금액을

- 공개대상 종목을 4개로 분류하고 세부항목 62종을 44종으로 통합하고
- 열람 및 출력물 구분을 단위수량별로 보기 쉽게 정리하고
- 문서·도면·사진의 열람, 복제는 장당 기준에서 시간 또는 용량(MB)기준으로 함.

○ 검토의견으로는 동(同) 조례안은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28조 및 제32조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제3조 관련 [별표]의 제2호에서 수수료 일부를 삭제하고 수수료 종목을 명료화하여 의료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을 없애고자 하였고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동(同) 조례 제3조의 별표 제4호에서 수수료의 종류 및 수수료

금액 개정 및 공개대상 종목을 4개로 분류하고 세부항목 62종을 44종으로 통합 정리 하여 수수료를 종목으로 구분하고, 열람 및 출력물 단위수량별로 우리 구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2002년 조례 제정이후 급변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도 수수료 변동사항이 거의 없어 다소 낮은 감은 있지만 주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서도 이번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관 계 법 규

의료법 시행규칙

[시행 2015.1.2.] [보건복지부령 제282호, 2015.1.2]

제28조(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)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
2.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
3.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
4.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
5.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고쳐 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 개서하여 주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.

제32조(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)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·의료법인·국가·지방자치단체·비영리법인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준정부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
2.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·정원 등의 개요설명서

②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에 따른 신고 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26조,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별지 15호서식”은 “별지 제15호의2서식”으로, “별지 제17호서식”은 “별지 제17호의2서식”으로 본다.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[시행 2014.12.10.] [행정자치부령 제8호, 2014.12.10]

제7조(수수료의 금액)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.

[별 표] <개정 2014.12.10.>

수 수 료 (제7조 관련)

공개대상	공개방법 및 수수료	
	열람·시청	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
문서·도면· 사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열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일 1시간 이내: 무료 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본(종이출력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3 이상 300원 · 1장 초과마다 100원 - B4 이하 250원 · 1장 초과마다 50원
필름· 테이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청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 ○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시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 ○ 영화필름의 시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 -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 ○ 사진필름의 열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장: 200원 · 1장 초과마다 5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개마다 5,000원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건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롤마다 5,000원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편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사진필름의 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컷마다 6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사진필름의 인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컷마다 500원 · 1장 초과마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"×5" 200원 5"×7" 300원 8"×10" 400원
마이크로필름· 슬라이드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건(10컷 기준)1회: 50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본(종이출력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3 이상 300원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<p>○ 슬라이드의 시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1컷마다 20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장 초과마다 200원 - B4 이하 250원 · 1장 초과마다 150원 <p>○ 마이크로필름의 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롤마다 1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<p>○ 슬라이드의 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컷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
전자파일	<p>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열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일 1시간 이내 : 무료 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 <p>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시청·청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편: 1,500원 ·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	<p>○ 사본(종이출력물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3 이상 300원 · 1장 초과마다 100원 - B4 이하 250원 · 1장 초과마다 50원 <p>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건 1MB(메가바이트) 이내: 무료 -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(다만,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) 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 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※ 매체비용은 별도 <p>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 -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,5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

< 비교 >

1.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.
2.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, 출력물,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
3.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참 고 자 료

(마포구 및 타 자치단체 수수료 현황)

[별표]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(제3조 관련)

현 행 < 마 포 구 >			
4.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(62종)			
종 목	단 위	수수료액	비고
원본의 열람·시청			
(1) 문서·대장 등 열람	1건(10매기준) 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	200원 100원	
(2) 도면·카드 등 열람	1매 1매초 과마다	200원 100원	
(3) 사진 열람	1매 1매초 과마다	200원 50원	
개 정 안 < 마 포 구 >			
4.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(44종)			
종 목	열람·시청	단 위	수수료액
문서·도면· 사진 등	(1) 문서·도면·사진 등 열람	1일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	2,000원 1,000원
개 정 조 례 < 타 자치단체 >			
○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(44종)			
종 목	열람·시청	단 위	수수료액
문서·도면· 사진 등	(1) 문서·도면·사진 등 열람 (18개 자치단체) 영등포구, 부산시(영도구, 부산진구, 북구, 사하구, 수영구),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중구, 인천광역시(동구, 중구, 남구, 부평구, 연수구),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(광산구, 동구)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	1일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	무료 1,000원
문서·대장 등	(1) 문서·대장 등 열람(5개 자치단체) 종로구, 금천구, 대구광역시 달서구, 광주 광역시 남구, 울산광역시 동구	1건(10매 기준) 1회 10매 초과 시 5매 마다	200원 100원